

관세연구 15 - 02

#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2015.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연구원

박 지 우 연구원

홍 현 표 위촉연구원

# 목 차

I. 서론	7
1. 연구 목적 및 배경	7
2. 연구 내용	8
II.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	10
1.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	10
가. 사전심사제도	10
나. 사후심사제도	17
2. 우리나라 관세행정구제제도 현황	35
III. 주요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40
1. 미국	40
가. 개관	40
나. 사전심사제도	42
다. 사후심사제도	42
2. 일본	49
가. 개관	49
나. 사전심사제도	52
다. 사후심사제도	52
3. 중국	58
가. 개관	58
나. 사전구제제도	60
다. 행정복의제도	61

4. 프랑스.....	68
가. 개관.....	68
나. 사전심사제도.....	69
다. 사후심사제도.....	70
IV. 국제비교.....	78
1. 관세불복의 근거 법령.....	78
2. 사전 구제 수단의 유무.....	79
3. 사후 절차의 단계 구분.....	80
4. 필수적 행정전치의 여부.....	81
5. 기타 행정심판결정기관.....	81
6. 이의신청 기간 비교.....	82
7. 소결.....	83
참고문헌.....	85

## 표목차

〈표 II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기관.....	12
〈표 II -2〉 우리나라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유형.....	19
〈표 II -3〉 과세전 적부심 현황.....	35
〈표 II -4〉 관세청 심사청구 현황.....	35
〈표 II -5〉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현황.....	36
〈표 II -6〉 감사원 심사청구 현황.....	36
〈표 II -7〉 2014년 청구 세목별 처리 건수 및 인용률.....	37
〈표 II -8〉 2014년 청구 세액별 처리기간.....	38
〈표 II -9〉 2014년 세액별 처리율 및 인용률.....	39
〈표 III -1〉 EU 「관세법」상 이의신청 관련조항.....	70
〈표 III -2〉 프랑스 「관세법」상 이의신청 관련조항.....	72
〈표 IV -1〉 각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83

## 그림목차

[그림 II -1] 과세전통지서	14
[그림 II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5
[그림 II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16
[그림 II -4] 이의신청 처리절차	20
[그림 II -5] 이의신청서 양식	22
[그림 II -6] 관세청 심사청구서 양식	26
[그림 II -7] 심판청구 결정절차	29
[그림 II -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 양식	30
[그림 II -9] 우리나라 관세구제제도 절차	33
[그림 II -10] 감사원 심사청구 양식	34
[그림 III -1] 미국의 관세 불복절차	41
[그림 III -2] CBP Form 19 이의신청 양식	44
[그림 III -3] 일본의 관세 불복절차	52
[그림 III -4] 일본 이의신청서 c-7000	54
[그림 III -5] 중국 해관 행정복의 이행절차	62
[그림 III -6] 중국 행정재심신청서	64
[그림 III -7] 중국 관세행정 구제제도 진행 절차도	68
[그림 III -8] 프랑스의 관세 불복절차	73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배경

- 우리나라는 2016년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미국을 비롯하여 EU 등 대부분의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음
- 점차 교역이 확대되어 수출입 업체들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비롯하여 통관 등 관세 행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관세청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관세의 징수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는 무역 장애로 이어질 수 있음
- 관세청의 위법 행위와 행정적인 부당한 처사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당한 법률적인 장치가 관세행정 구제제도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업체들은 해외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이와 관련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임
  - 2004년 이후 해외 각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 비교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sup>1)</sup>
- 또한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구제제도는 심사청구 주체의 이원화(관세청 및 감사원) 및 선택적 임의 절차인 이의신청과 함께 과세 전 적부 심사 또한 병행으로 운영되며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옴<sup>2)</sup>

---

1) 중국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를 비교한 논문 존재

2) 정재완,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관세학회지』, 제4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3, P. 45.

- 심사청구뿐 아니라 심판 청구 또한 존재하고 있으며 각 처분청이 관세청, 국제심판원, 감사원으로 달라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제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기본 정보를 제공할 것임
- 다만, 각국은 국가의 문화, 환경, 역사 등으로 인하여 법체계가 상이하며 따라서 관세행정 구제제도 자체의 단순한 비교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현행제도의 보완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관세 연구의 일종으로 각국의 관세 행정 구제제도의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본 연구 목적이 있음

## 2. 연구 내용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주요국들의 관세법 및 관련법상 관세 행정 구제제도의 내용을 조사하였음
  - 단, 본 연구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같은 사법구제 이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행정구제에 초점을 맞추었음
  - 우리나라의 관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불복 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및 사후 관세 행정 구제제도에 대해 외국의 관세 규정상 입법 여부 및 단계, 내용 등을 조사함
- 조사 대상국으로는 FTA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 중국, 프랑스(EU) 및 우리나라가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 TPP 가입국인 일본을 선정하여 살펴보았음
- 본 보고서는 제 I 장 서론을 포함하여 5장으로 구성되었음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관세행정 구제제도의 사전, 사후 제도 신청 현황 및 판결 현황, 소송 내용 등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의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루었음
-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으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의 관세 행정구제제도 규정에 대해 조사함
  - － 각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의 절차 및 방법, 관련 규정 및 기타 특이 사항 및 제도에 대해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주요국의 관세행정 구제제도를 관세불복의 근거법령, 사전 구제수단의 유무, 사후 절차의 단계구분, 필수적 행정전치의 여부, 기타 행정심판결정기관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하였음

## Ⅱ.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

### 1.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

#### 가. 사전심사제도

- 우리나라는 관세를 납부하기 전<sup>3)</sup>에 과세내용을 통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음
  -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납세자를 사전에 구제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됨
  
-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목적은 납세자의 권익을 납세 전에 보호하는 제도로 민원을 축소하고 관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음<sup>4)</sup>
  
-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sup>5)</sup>
  - 단, 다음의 경우 과세 전 통지를 생략하고 즉시과세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sup>6)</sup>

---

3) 과세고지 전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info.nts.go.kr, 검색일자, 2016. 2. 4.

5) 「관세법」 제118조

- 과세 전 통지는 납세 의무자 별 1건으로 통지하며 수입신고서별, 세목별 세액을 명시해야 함
  
- 과세 전 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세관장은 경정 및 고지를 유예하고 청구 기한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 및 고지를 유예해야 함<sup>7)</sup>
  -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 및 고지를 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처분 이유를 청구인에게 별도로 통지해야만 함<sup>8)</sup>
  
-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세액과 관련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과세 전 통지를 한 세관이 속하는 본부 세관장에게 하여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비록 세관장의 과세통지라도 관세청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심사기관 또한 관세청장이 됨<sup>9)</sup>
  - 관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관세청장의 업무 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 분류의 관세율 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sup>10)</sup>

---

6)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A%B4%80%EC%84%B8%EB%B2%95%EC%A0%9C118%EC%A1%B0](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A%B4%80%EC%84%B8%EB%B2%95%EC%A0%9C118%EC%A1%B0) 검색일자, 2016. 2. 4

7)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8)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9)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10)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 동일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한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접수일자를 기록하여 접수증을 교부해야함

〈표 II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기관

과세전통지기관	적부심 청구기관
서울세관장 · 구로세관장 · 대전세관장 · 성남세관장 · 안양세관장 · 동해세관장 · 청주세관장 · 천안세관장 · 의정부세관장 · 대신세관장 · 충주세관장 · 속초세관장 · 원주세관장 · 파주세관장	서울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 김포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부산세관장 · 용당세관장 · 김해세관장 · 창원세관장 · 양산세관장 · 마산세관장 · 거제세관장 · 사상세관장 · 사천세관장 · 진주세관장 · 부산국제우편세관장 · 통영세관장	부산세관장
인천세관장 · 수원세관장 · 안산세관장 · 평택세관장 · 부평세관장	인천세관장
대구세관장 · 포항세관장 · 구미세관장 · 울산세관장	대구세관장
광주세관장 · 국산세관장 · 목포세관장 · 여수세관장 · 광양세관장 · 제주세관장 · 익산세관장 · 전주세관장	광주세관장

출처: 『관세법』, 정재완 저, p. 491 및 시행규칙 제61조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sup>11)</sup>
- 심사청구기간은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음
  -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11) 「관세법」 제118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본부세관 또는 관세청에 설치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함<sup>12)</sup>
  -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 종료를 의결이라 하며 결정은 재결청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함
  -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 전 적부심사의 경우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됨
  - 세관장에 제기된 과세 전 적부심사의 경우 본부세관(서울세관·인천공항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위원장은 본부세관장이 됨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채택한다는 결정(청구의 일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일부만 채택)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등 총 3개임<sup>13)</sup>
  - 채택한다는 결정이 있으면 과세 전 통지를 취소해야 함
  - 채택 및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경우 과세 전 통지된 바에 따라 경정 및 고지 등의 처분을 실시함
  
-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 되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지만 결정에 따른 세관의 처분(납부고지서 교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sup>14)</sup>
  
-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청구의 변경, 심판의 참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

12)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law/rule/RuleUserDetail.do?layoutMenuNo=20215&admRul=2&admRulSeq=3737> 검색일자, 2016. 2. 9.

13) 「관세법」 제118조

14)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sup>15)</sup>

[그림 Ⅱ-1] 과세전통지서

사건번호		적부심사 제	호
통 지 세 관 장			청구금액
청구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주 문			

<이 유>

20 년 월 일 귀하가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세 관 장 직  
(관 세 청 장) 인

공지사항

※ 이 결정서에 대한 문의는 우리세관 과 담당자 (☎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cmm/fms/LawFileDown.do;jsessionid=80t1RrTZGFhTNJ R7CfrYlpyFgJPgnJhmCQTCvfp1Dh1JY9S7sJPp!118990603?fileSeq=5318>, 검색일자 2016. 2. 19

15) 「관세법」 제118조



## [그림 II-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통지번호		
납 세 의 무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정대상 물품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경정이유	
* 근거법령 등 추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수입신고서별 추징예정세액 계산 내역서 등은 따로 붙임	

경정·고지 예정세액					
관 세	부가가치세	세목을 기재	세목을 기재	가 산 세	합 계

「관세법」 제118조제1항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세관장 직인

공지사항	
※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서 1부를 작성하여 우리세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통지서에 대한 문의는 우리세관            과 담당자            (☎    -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cmm/fms/FileDown.do?atchFileId=BOAD\\_000000000043851&fileSn=0](http://www.customs.go.kr/kcshome/cmm/fms/FileDown.do?atchFileId=BOAD_000000000043851&fileSn=0), 검색일자 2016. 2. 19.

### 나. 사후심사제도<sup>16)</sup>

- 현행 「관세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라 세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권익이 위법<sup>17)</sup>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되었을 경우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가 납세 전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인 것과 달리 위 3개 관세행정구제제도는 납세 후 심사를 받는 사후구제 성격을 가짐
- 우리나라는 위법한 관세 처분에 대하여 「관세법」상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한 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즉 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한 뒤 그 결정에 불복 시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함<sup>18)</sup>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불복청구의 청구인이 될 수 있음<sup>19)</sup>
  - 이해관계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양도담보권자로서 납세의무를 지게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등임
    - 「관세법」에는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됨

16) 과세 후 구제조치

17)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

18)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19)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 결정례,  
<http://english.customs.go.kr/kcshome/law/precedent/PrecedentUserDetail.do?sessionId=1JQ2JxccbLhRyqWg2x1pBTjnXT7PgpLDhtSG7Dg143Jvc9jQqfTG!494658294?layoutMenuNo=20228&class1=3&currentPageNo=5&searchCondition=&searchKeyword=&startDate1=&endDate1=&startDate2=&endDate2=&deccNo=432>, 검색일자 2016. 2. 23.

- 피청구인이란 관세불복청구를 제기받은 상대방인 당사자를 말함
  - 심사청구의 피청구인은 관세청장,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은 조세심판원장, 감사원 심사청구의 피청구인은 감사원장임
    - 과세관청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므로 관세청의 관세에 관한 처분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가능함
  
- 세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자는 처분청인 세관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 상급 감독청인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sup>20)</sup>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의 청구기관은 해당 세관이며 심사청구의 청구기관은 관세청, 심판청구의 청구기관은 조세심판원임
  
- 과세전적법심사청구가 채택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납세자는 1차적으로 처분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며, 그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관세청) 및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하게 됨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관세청에 심사청구 시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에 중복 심사청구가 불가함<sup>21)</sup>
  
- 행정심판은 일정기간(불변기간) 동안 제기되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다음 제기된 불복청구는 각하됨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해야 함
  
- 관세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음
  - 행정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 그 외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의

20)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며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

21) 선택적 필수주의로 법률 제5993호로 개정(2000. 1. 1.)

판결보다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져 시간이 절약됨

〈표 II-2〉 우리나라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유형

불복청구의 종류	제기기간	재결청	심리기관	재결기한
이의신청	90일 이내	처분청인 세관장	세관의 관세심사위원회	30일 이내
심사청구	90일 이내	관세청장	관세청의 관세심사위원회	90일 이내
심판청구	90일 이내	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회의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	90일 이내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90일 이내

출처: 『관세법』, 정재완 저, p. 502 관세불복청구 제기와 재결

1)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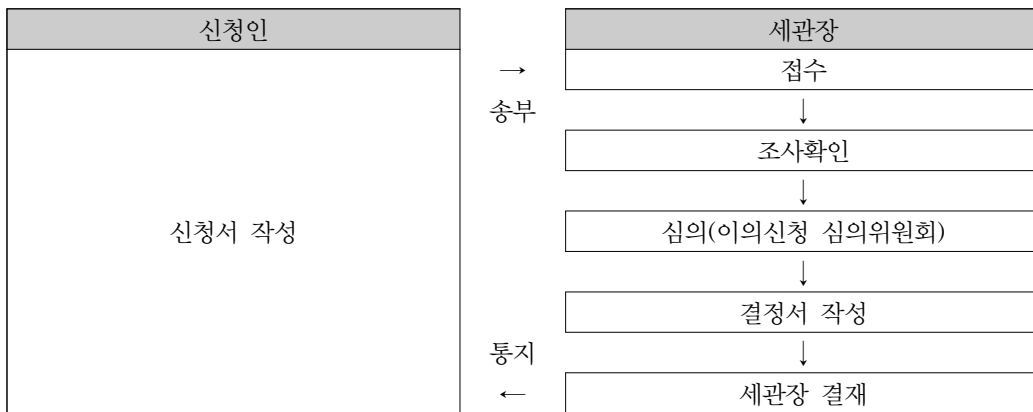
- 이의신청의 청구인은 「관세법」에 의거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자임<sup>22)</sup>
- 이의신청의 피청구인은 처분을 내린 세관장으로, 관세에 관한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이 이의신청의 청구대상이 됨
- 납세자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이의신청 접수는 이의신청 신청자가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청구인 정보, 청구대상 정보, 불복의 이유 등임
- 세관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하여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해 함<sup>23)</sup>

22) 「관세법」 제119조

23)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3장 22조

- 결정은 이의신청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각과 이의신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용<sup>24)</sup>이 있음
    - 인용 결정은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두 가지 결정으로 분류됨
  - 그 외에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인 각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부존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인 당사자 부적격 등이 있음<sup>25)</sup>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관세심사위원회 담당으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담당은 관세심사위원회로 과거 이의신청심의위원회<sup>26)</sup>에서 2012년부터 변경됨
- 이의신청인은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재결정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sup>27)</sup>

[그림 II-4] 이의신청 처리절차



24) 취소라고도 함

25) 국세청, 「국세심사업무편람」, p. 24.

26) 2003년 관세청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30개 세관에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2012년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에 따라 제6조제2항 중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

27) 「관세법」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 이의신청제도는 제1단계 행정구제제도에 해당하지만 필수전심제도가 아니므로 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를 바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함
  - 필요적 전심절차가 아닌 임의적 선택절차임
  
- 즉, 이의신청 제도는 임의적 선택절차로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성격보다는 원처분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이의신청제도는 「관세법」상 심사청구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함
  - 하지만 쟁송절차로서 대립당사자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성격은 희박한 구제수단임<sup>28)</sup>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의신청제도를 불복수단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원처분청이 재결청 즉, 관세청이기 때문에 시정의 재량이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sup>29)</sup>

---

28) 한국관세사회, 2007.

29) 「한국과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2013.



## 2) 심사청구

- 이의신청인은 관련 처분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관세법」 제5장 2절 119조(불복신청)에 따르면,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sup>30)</sup>
  
- 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적 전심절차임
  -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제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짐
  
- 심사청구서에 필요한 기재 사항은 심사청구인의 주소, 성명,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짜, 처분내용,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등 총 4개임<sup>31)</sup>
  
-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하며,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사본의 여백에 작성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발급일자를 기재해야 함<sup>32)</sup>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5장2절119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4%80%EC%84%B8%EB%B2%95#JP110:0>, 검색일자: 2016. 2. 23.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 법119조, <http://www.law.go.kr/lsSideInfoP.do?lsiSeq=174829&lsId=&joNo=0145&joBrNo=00&docCls=jo&chrClsCd=010202&urlMode=lsScJorltInfoR>, 검색일자: 2016. 2. 25.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제6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26008>, 검색일자: 2016. 2. 25.

-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sup>33)</sup>
-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은 5가지로 제한됨
  - 관세청장의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
  - 관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 관세평가분류원장에 따른 처분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
  - 그 밖의 질의회신 등 관세청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처분
- 관세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관세청 및 5개 본부세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 1명과 61명의 위원으로 구성됨<sup>34)</sup>
  -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혹은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임
  -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 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혹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임
  - 일선 세관의 관세심사위원회는 일선 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 혹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임
-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청의 결정 종류는 기각, 인용<sup>35)</sup>, 각하 등이 있음
  - 기각은 청구인의 주장 및 이유 등을 심사한 결과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임
  -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 및 이유 등을 심리한 결과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결정임
  - 각하는 청구인의 청구요건이 부적법하여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복청구가 제기 된 경우 등이 이에

33) 「관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5항

34) 「관세법」 제124조

35) 취소라고도 함

해당함

- 기타 경정결정 및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음
  
- 관세청장은 신청인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결정기간이 만료했음에도 결정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기간 경과일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림 II-6] 관세청 심사청구서 양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증 발급일자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한함
	주소				
	청구담당자	직함	이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청구대상	처분청	세관장	처분유형 [ ]	고지처분 [ ]	경정청구기각처분 [ ] 기타처분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용	20년월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년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년월일)				
이의신청을 한 날	20년월일(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20년월일)				
불복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복이유를 입력하시거나, 별도 화일(중이)로 작성하여 첨부(제출)하실 수 있습니다.</li> <li>* 경정통지서 등 증거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시거나, 양이 과다한 경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 “업무처리” 전자민원) 처리현황조회”에서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해당 결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인터넷통관포탈 :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li> </ul>				

「관세법」 제122조 및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위임장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구분 [ ]	관세사 [ ]	변호사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접수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download/jud\\_claim.hwp](http://www.customs.go.kr/download/jud_claim.hwp), 검색일자 2016. 2. 22.

### 3) 심판청구

- 심판청구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구제수단임<sup>36)</sup>
  
- 청구인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sup>37)</sup>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보증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 신청자는 세관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음<sup>38)</sup>
  - 세관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청구서 1부를,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해야 함
  
-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함
  
-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이지만, 동일처분에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7장제1절제55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199&efYd=20160301#JP55:0>, 검색일자: 2016. 2. 26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7장제1절제55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199&efYd=20160301#JP55:0>, 검색일자: 2016. 2. 26

3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

대해서는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sup>39)</sup>

-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직접 조세심판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함<sup>40)</sup>
  - 이 경우 세관장은 제1호의 세관장 답변서 사본과 심판청구 진행상황표<sup>41)</sup>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함<sup>42)</sup>
-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기각, 취소, 재조사, 경정, 각하 등이 있음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제도를 통해 결정되며, 심판관의 독립성이 보장됨
  -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위원장이 지정하는 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을 추구함<sup>43)</sup>
  -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위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결정함
-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sup>44)</sup>
-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7장제1절제55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199&efYd=20160301#JP55:0>, 검색일자: 2016. 2. 26

40) 「국세기본법」 제69조(청구절차)

41) 별지 제9호서식

42) (개정)조문·서식 정비, 「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제출기간 통일

43) 처분청(세관)의 상급행정기관(관세청)으로부터 독립

44)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국세기본법」 제78조,  
[http://www.tt.go.kr/mUser/law/searchEngineLawViewPopup.do?law\\_id=001586&public\\_ilja=20151215&public\\_no=13552&jomun\\_id=0078005&mode=searchEngine](http://www.tt.go.kr/mUser/law/searchEngineLawViewPopup.do?law_id=001586&public_ilja=20151215&public_no=13552&jomun_id=0078005&mode=searchEngine), 검색일자: 2016. 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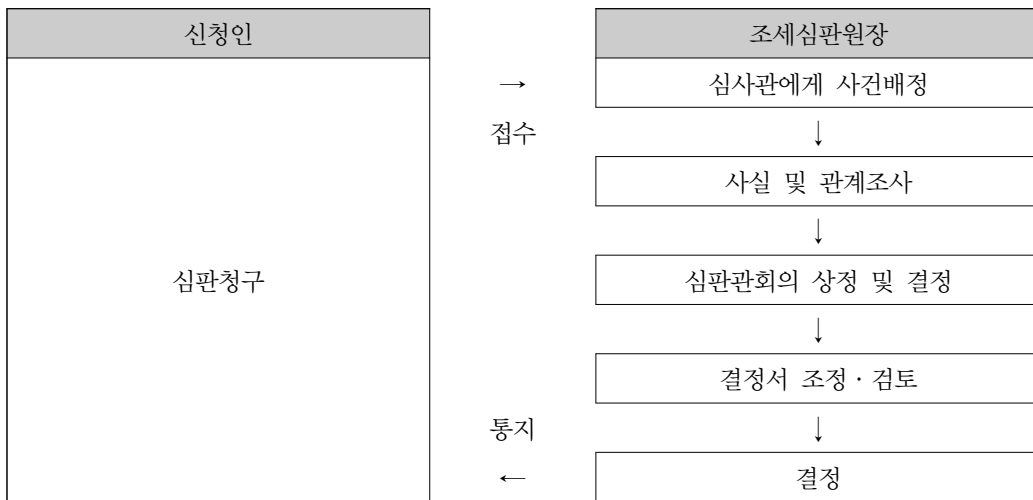
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sup>45)</sup>

-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위에 제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 위에 제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등임

□ 심판결정은 문서로 해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관장에게 송달함<sup>46)</sup>

□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해당 행정청 즉 세관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함<sup>47)</sup>

[그림 II-7] 심판청구 결정절차



45)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국세기본법」 제76조,  
[http://www.tt.go.kr/mUser/law/searchEngineLawViewPopup.do?law\\_id=001586&public\\_ilja=20151215&public\\_no=13552&jomun\\_id=0076005&mode=searchEngine](http://www.tt.go.kr/mUser/law/searchEngineLawViewPopup.do?law_id=001586&public_ilja=20151215&public_no=13552&jomun_id=0076005&mode=searchEngine), 검색일자: 2016. 2. 29.

46)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국세기본법」 제78조,  
[http://www.tt.go.kr/mUser/law/searchEngineLawViewPopup.do?law\\_id=001586&public\\_ilja=20151215&public\\_no=13552&jomun\\_id=0078005&mode=searchEngine](http://www.tt.go.kr/mUser/law/searchEngineLawViewPopup.do?law_id=001586&public_ilja=20151215&public_no=13552&jomun_id=0078005&mode=searchEngine), 검색일자: 2016. 2. 29.

47)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 4)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독립적 지위에서 처분의 정당 혹은 부당 여부를 가려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을 시정하도록 하는 권리구제수단임
-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sup>48)</sup>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는 날<sup>49)</sup>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함<sup>50)</sup>
-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sup>51)</sup>
- 관계기관의 장은 접수한 심사청구서를 검토하여 불복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자체 시정함
  -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함<sup>52)</sup>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내용을 시정하도록 함<sup>53)</sup>

48)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세금부과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49) 어떤 행위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있으므로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50) 국세청, 「국세심사업무편람」, p. 114

51)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6조의2

52)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bai/html/examinationclaims/examinationclaimsinfo.do?mdex=bai56>,  
검색일자: 2016. 2. 29.

53)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bai/html/examinationclaims/examinationclaimsinfo.do?mdex=bai56>,  
검색일자: 2016. 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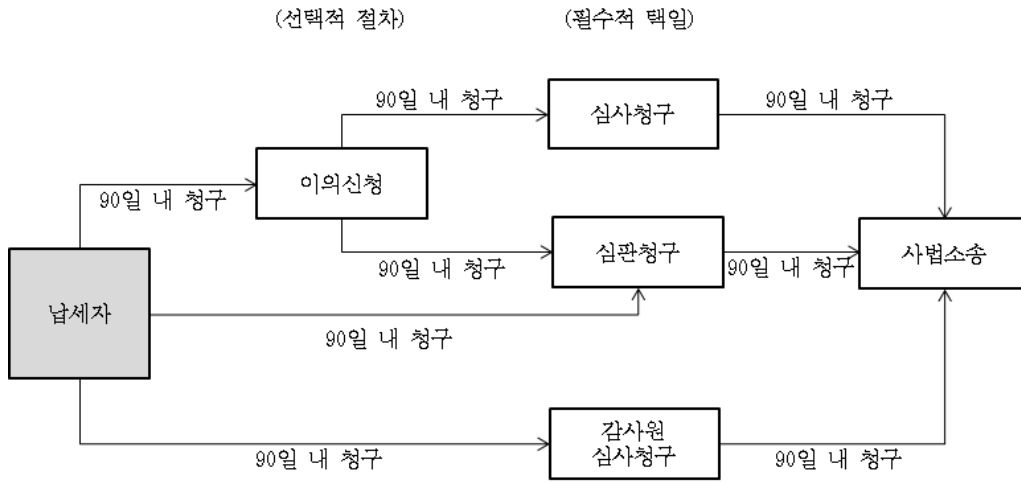
- 기각결정은 청구주장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각하결정은 심사청구가 법규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7가지 경우가 있음
  - ① 청구대상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 ② 청구인이 당해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③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
  - ④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함)의 재결이 있는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 ⑤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심사청구의 심리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포함함)
  - ⑥ 기타 감사원법 또는 감사원심사규칙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⑦ 위 ① 내지 ⑥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 요구하였으나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당해 처분에 대해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sup>54)</sup>
-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당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의 취하신청을 할 수 있음<sup>55)</sup>

---

54)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bai/html/examinationclaims/examinationclaimsinfo.do?mdex=bai56>,  
 검색일자: 2016. 2. 29.

55)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bai/html/examinationclaims/examinationclaimsinfo.do?mdex=bai56>,  
 검색일자: 2016. 2. 29.

[그림 II-9] 우리나라 관세구제제도 절차



[그림 II-10] 감사원 심사청구 양식

1. 청 구 인	주 소 (사무소의 소재지)				
	성 명 (상호)			전화번호	
	직 업 (업 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령	
2.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는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					
7.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p>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 . 청구인 (인)</p> <p>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p> <p style="text-align: right;">감 사 원 귀 중</p>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bai/html/examinationclaims/examinationclaimsinfo.do?mdex=bai56>,

검색일자 2016. 2. 23.

## 2. 우리나라 관세행정구제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 현황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 구제제도인 과세전 적부심과 사후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음
  - 사전 및 사후 구제제도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현황을 확인해 보았음

〈표 II-3〉 과세전 적부심 현황

(단위: 건수,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처리건수(누적)	62	244	434	222	384	1,440	380
인용건수	24	61	62	74	79	135	91
인용률	38.71	25	14.29	33.33	20.59	9.4	23.94

출처: 관세청 청구자료(정보공개 포털<http://www.open.go.kr/>) 검색 일자: 2016. 2. 25.

-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2015년 처리건수는 380건이며 인용 건수는 91건으로 처리건수 대비 인용 건수 비율은 23.94%임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인용률은 50%대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특히 2014년도의 경우 처리건수가 1,440건이었고 인용건수도 135건으로 많았지만 인용률은 9.4%로 가장 낮았음

〈표 II-4〉 관세청 심사청구 현황

(단위: 건수,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처리건수(누적)	13	13	54	41	25	13	28
인용건수	8	2	7	22	10	4	3
인용률	61.54	15.38	12.96	53.66	40	30.77	10.71

출처: 관세청 청구자료(정보공개 포털<http://www.open.go.kr/>) 검색 일자: 2016.2.25.

- 2015년 심사청구 처리건수는 28건이며 인용건수는 3건으로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은 10.71%임

- 조세심판원보다 낮은 처리건수와 인용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인용률도 2009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50% 미만의 비교적 낮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음
- 2009년의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은 61.54%였고, 2012년의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은 53.66%임

〈표 II-5〉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현황

(단위: 건수,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처리건수(누적)	149	221	187	192	252	381	164
인용건수	40	112	59	68	138	215	72
인용률	26.85	50.68	31.55	35.42	54.76	56.43	43.90

출처: 관세청 청구자료(정보공개 포털<http://www.open.go.kr/>) 검색 일자: 2016. 2. 25.

- 2015년 심판청구 처리건수는 164건이며 인용건수는 72건으로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은 43.90%임
- 최근 7년 동안 처리건수가 많았던 연도에 인용률이 모두 50%를 상회한다는 특징을 보임
- 2014년의 경우 누적처리건수는 381건으로 그 중 215건이 인용결정 되어 인용률이 56.43%를 기록함
- 그 외 2013년, 2010년에도 처리건수는 각 252건, 221건이었으며 인용률은 각 54.76%, 50.68%를 기록하는 등 모두 50%를 상회함

〈표 II-6〉 감사원 심사청구 현황

(단위: 건수,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처리건수(누적)	8	0	0	0	0	1	0
인용건수	1	0	0	0	0	1	0
인용률	12.5	0	0	0	0	100	0

출처: 관세청 청구자료(정보공개 포털<http://www.open.go.kr/>) 검색 일자: 2016. 2. 25.

- 2015년 감사원 심사청구 처리건수는 0건으로 관세청 및 조세심판원의 처리건수에 비해 과소함
  - 최근 7년간 감사원의 심사청구 누적 처리건수는 총 9건이며, 그중 2010년~2013년 4개 연도 및 2015년 1개 연도는 처리 및 인용 건이 없음
  
- 다만, 2014년에 심사청구 건의 경우 1건 처리에 대해 1건 인용 결정되어 인용률이 100%를 기록함
  
- 다음은 조세심판원의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세목별, 세액별 현황을 파악해 보았음

〈표 II-7〉 2014년 청구 세목별 처리 건수 및 인용률

(단위: 건, %)

청구 세목	처리대상 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sup>1)</sup>	인용률
		소계 <sup>2)</sup>	인용		
지방세	2,658	2,308	194	86.8	8.4
부가가치세	1,800	1,380	568	76.7	41.2
양도소득세	1,395	1,189	296	85.2	24.9
법인세	1,271	600	206	47.2	34.3
증여세	968	633	167	65.4	26.4
종합소득세	809	566	153	70.0	27.0
관세	339	260	138	76.7	53.1
국세기타	318	258	34	81.1	13.2
상속세	159	120	47	75.5	39.2

주: 1) 처리건수/처리대상건수

2) 처리건수는 취하, 각하, 기각, 재조사 및 인용을 모두 포함한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 2014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재작성

-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가 된 세목 중 지방세가 가장 많은 처리건수와 처리율을 보였으며 관세의 처리대상 건수 및 처리건수는 비교적 다른 세목에 비해 적은 편임
  - 처리율은 76.7%로 세목 중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기타, 다음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함

□ 그러나 인용률의 경우 53.1%로 전체 세목 중 관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II-8〉 2014년 청구 세액별 처리기간

(단위: 건, %, 일)

청구 세액별	60일 이내		61일~90일		91일~180일		180일 초과		평균 처리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3천만원 미만	1	0.5	85	42.1	73	36.1	43	21.3	125
3천만원~1억원	1	1.9	3	5.8	24	46.2	24	46.2	199
1~5억원	—	—	1	1.3	36	46.2	41	52.6	209
5~10억원	—	—	1	4.0	8	32.0	16	64.0	232
10~50억 원	1	2.5	1	2.5	12	30.0	26	65.0	210
50~100억 원	—	—	—	—	1	20.0	4	80.0	348
100~200억 원	—	—	—	—	—	—	1	100.0	288
200~500억 원	—	—	—	—	—	—	3	100.0	276
500~1,000억 원	—	—	—	—	1	100.0	—	—	154
합 계	3	0.7	91	22.4	155	38.1	158	38.8	170

출처: 조세심판원,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 2014.

- 조세심판원에서 발간한 2014 조세심판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관세불복에 대한 청구 평균 처리일은 170일이 소요되었음
- 50~100억원대의 소송이 평균 처리기간 348일로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3천만원 미만의 소송이 평균 처리기간 125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처리됨
  - 처리 기간별로는 91에서 180일 혹은 180일이 초과되는 경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금액 대 별로는 3천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가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억원~ 5억원대의 불복 청구 비중이 높았음

〈표 II-9〉 2014년 세액별 처리율 및 인용률

(단위: 건, %)

청구 세액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sup>1)</sup>	인용률
	소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소계 <sup>2)</sup>	인용		
3천만원 미만	216	20	196	202	12	93.5	5.9
3천만원~1억원	64	7	57	52	17	81.3	32.7
1~5억원	100	21	79	78	23	78.0	29.5
5~10억원	38	4	34	25	12	65.8	48.0
10~50억원	53	17	36	40	13	75.5	32.5
50~100억원	10	4	6	5	—	50.0	—
100~200억원	7	—	7	1	1	14.3	100.0
200~500억원	9	5	4	3	3	33.3	100.0
500~1,000억원	3	1	2	1	1	33.3	100.0
1,000~5,000억원	5	—	5	—	—	—	—

주: 1) 처리건수/처리대상건수

2) 처리건수는 취하, 각하, 기각, 재조사 및 인용을 모두 포함한 것임

출처: 조세심판원,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 2014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재작성

- 처리대상건수는 3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1~5억원의 불복청구가 그 다음으로 처리대상 건수가 많았음
- 처리 건수 역시 3천만원 미만의 불복 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높은 처리율을 보였음
  - 1억원~5억원대의 불복청구가 처리건수로는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처리율은 3천만원~1억원의 불복청구가 높았음
- 100억원에서 5,000억원대의 불복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며 이를 제외하고 5~10억원대 불복 청구의 인용률이 높은 편임

### Ⅲ. 주요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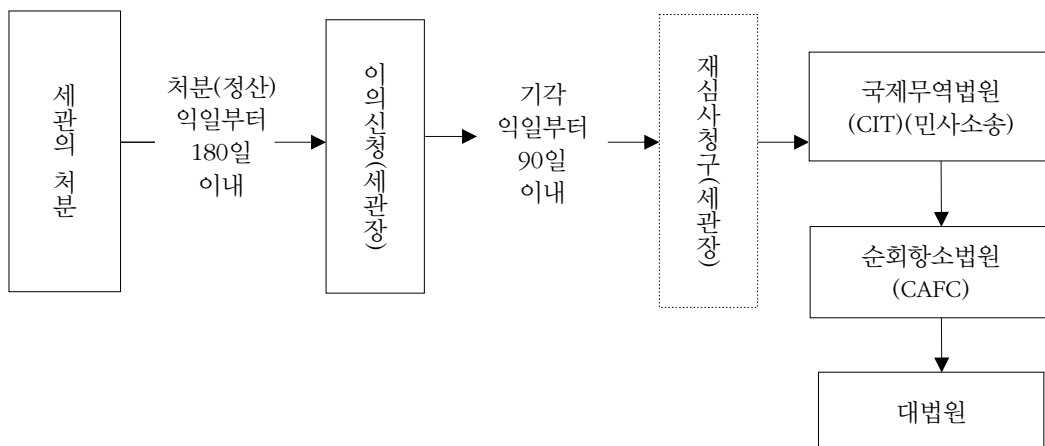
##### 가. 개관

- 관세 불복에 대해 일차적인 이의신청 접수기관은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의 세관이며 CBP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의 산하기관으로 무역, 세관, 국경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
- 미국의 「관세법」은 미국은 연방법전(U.S Code; 이하 U.S.C)의 총 제19편 관세(Title 19 Customs Duties)의 제4장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제3절 행정적 규정(Administrative Provisions)의 제3관 수입통관과 과세 및 납세절차에서 세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연방조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와 관세의 불복절차가 서로 상이하여<sup>56)</sup> 관세의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세관에서, 추후 법적 구제조치인 민사소송절차는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에서 진행됨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관련된 소송절차는 별도의 조세법원(Tax court)에서 진행되며 내국세법(26 U.S.C Internal Revenue Code)을 준용함
- 이의신청 및 재심사는 「관세법」(19 U.S. Code)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사법 절차는 사법부 및 사법절차법(28. U.S Code Judiciary and judicial Process) 중 28 U.S.C 169 국제무역법원 절차(Court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를 따름

56) 김영조 외, 『주요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국세청, 2005. 7, p. 24.

- 미국은 우리나라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같은 사전 구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CBP에 의해 정산(Liquidation; 이하 정산)<sup>57)</sup>이 완료 되었을 시 CBP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19 U.S.C 1514에 따라 이의제기(Protest; 이하 이의제기) 절차를 따라야 함<sup>58)</sup>
  - 이의신청은 수입된 물품과 관련한 CBP의 결정에 대해 수입자와 이해관계인이 행정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수단임
- 첫 번째 이의제기의 결과에 불복할 시 19 U.S.C 1515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여 상위 검사자의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이의제기 처리 기간(2년)보다 빨리 처분을 받고 싶을 시 신속처리(Accelerate Disposition; 이하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시 CIT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시 순회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

[그림 Ⅲ-1] 미국의 관세 불복절차



57) 세관이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을 말함

58)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protests>, 검색일자: 2016. 1. 27.

## 나. 사전심사제도

- 미국은 우리나라의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제도와 같은 사전 구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음

## 다. 사후심사제도

### 1) 이의신청(Protest)<sup>59)</sup>

- 이의신청과 관련한 「관세법」상 규정은 19 U.S.C 1514 세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Protest against decisions of Customs Service)이며 관련 절차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19 C.F.R 174.0 ~19 C.F.R 174.32에서 다루고 있음
- 19. U.S.C 1514에 따라 이의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표기상의 오류, 기타 부주의 사항 (inadvertences) 및 CBP의 행정적 결정 등이 있음
  - 표기상의 오류 및 기타부주의 사항 중 자발적인 재정산(voluntary reliquidations)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의 청원관련(Petitions by domestic interested Parties), 환급관련(계산착오로 인한 과소납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CBP의 행정적 결정 중 이의제기 대상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물품의 가격 및 물품의 분류와 관세율
    - 수입신고와 관련된 수정사항
    - 수입신고와 관련된 정산
    - 관세환급(재수출환급) 요청과 관련한 거절
    - 전산오류, CBP의 처리(transaction)와 관련한 오류 등
    - 세법과 관련한 규정하에 CBP에 구류(custody)되어 통관, 운송 혹은 재운송하기 어려운 물품
  - 단, 재정산<sup>60)</sup> 후 세관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59) 19 U.S.C 1514 및 19 C.F.R 174.0~19 C.F.R 174. 32을 번역한 내용임

60) 정산된 관세라도 최초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오류(사무적인 착오, 오해 및 부주의한 사

- 수입물품과 관련한 세관의 결정에 대해 수입자, 중개인 또는 변호사는 19 U.S.C 1514에 따라 CBP Form 19를 4부 작성하여 항의할 수(contest)있음
  - 그러나 CBP Form 19의 작성이 이의신청을 위한 법적 의무요건은 아님
  - 세관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관련 이해관계자가 서명했다면 그 어떤 문서도 이의신청 문서로 간주됨
  - 단, 다른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의신청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하고 CBP Form 19와 동일한 사이즈의 문서를 사용해야 하며 CBP의 문서에 규정된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이의신청을 접수한 세관에서는 5번째 부분에 이의제기가 접수될 날짜와 접수되었는 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돌려줌

---

항), 적용법령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관세의 재정산(reliquidation)을 실시함

[그림 III-2] CBP Form 19 이의신청 양식

Approved OMB No. 1651-0017  
Exp. 03/31/2016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PROTEST**

Pursuant to Sections 514 & 514(a),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CFR Part 174 et. seq.

NOTE: If your protest is denied, in whole or in part, and you wish to CONTEST the denial, you may do so by bringing a civil action in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mailing of Notice of Denial. You may obtain furth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stitution of an action by writing the Clerk of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One Federal Plaza, New York NY 10007 (212-264-2800).

1. PROTEST NO. (Supplied by CBP)

2. DATE RECEIVED (CBP Use Only)

---

**SECTION I - IMPORTER AND ENTRY IDENTIFICATION**

3. PORT	4. IMPORTER NO.	5. ENTRY DETAILS			
6.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OR OTHER PROTESTING PARTY	PORT CODE	FILER CODE	ENTRY NO.	CHECK DIGIT	DATE OF ENTRY
	DATE OF LIQUIDATION				
7. Is Accelerated Disposition being requested (19 CFR 174.22)?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SECTION II - DETAILED REASONS FOR PROTEST**

8.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of merchandise, set forth, separately, (1) each decision protested, (2) the claim of the protesting party, and (3) the factual material and legal arguments which are believed to support the protest. All such material and arguments should be specific. General statements of conclusions are not sufficient.

*(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

**SECTION III - REQUEST FOR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ACTION ON PREVIOUSLY FILED PROTEST**

Protesting party may request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ion taken on a previously filed protest that is the subject of a pending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and is alleged to involve the same merchandise and the same issues. (See 19 CFR 174.13(a)(7).) To request such disposition, enter in Blocks 8 and 9 the protest number and date of receipt of such previously filed protest.

	9. PROTEST NO. OF PREVIOUSLY FILED PROTEST	10. DATE OF RECEIPT
--	--	---------------------

---

**SECTION IV - SIGNATURE AND MAILING INSTRUCTIONS**

11. NAME AND ADDRESS OF PERSON TO WHOM ANY NOTICE OF APPROVAL OR DENIAL SHOULD BE SENT	12. NAME, ADDRESS, AND CBP IDENTIFICATION NUMBER TO WHICH REFUND SHOULD BE SENT	13. IF FILING AS ATTORNEY OR AGENT, TYPE OR PRINT YOUR NAME, ADDRESS AND IMPORTER NUMBER, IF ANY
14. SIGNATURE <b>X</b>		DATE

---

*(Optional) SECTION V -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Fill in Item 1 above if this is a separate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15. MARK BOX CORRESPONDING TO YOUR ANSWER TO EACH OF THE FOLLOWING QUESTIONS

YES	NO	(A) Have you made prior request of a port director for a further review of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substantially similar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 Have you received a final adverse decision from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on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category of merchandise or do you have action involving such a claim pending before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 Have you previously received an adverse administrative decision from the Commissioner of CBP or his designee or have you presently pending an application for an administrative decision on the same claim with respect to the same category of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JUSTIFICATION FOR FURTHER REVIEW UNDER THE CRITERIA IN 19 CFR 174.24 AND 174.25 (Include Applicable Rulings)

---

*(Attach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SECTION VI - DECISION (CBP USE ONLY)**

17. 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Approved\*  Denied for the reason checked:  Untimely filed  Does not meet criteria  Other, namely EXPLANATION:

---

\*When further review only is approved the decision on the protest is suspended, pending issuance of a protest review decision.

18. PROTEST EXPLANATION:  Approved  Rejected as non-protestable  Denied in full for the reason checked:  Denied in part for the reason checked:  Untimely filed  See attached protest review decision  Other, namely

---

19. TITLE OF CBP OFFICER

20. SIGNATURE AND DATE

---

*Previous Editions are Obsolete* **CBP Form 19 (05/10)**

출처: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http://map.naver.com/?query=%EC%A7%80%EC%A1%B1+%ED%94%BC%EC%A0%9C%EB%A6%AC%EC%95%84&type=SITE\\_1](http://map.naver.com/?query=%EC%A7%80%EC%A1%B1+%ED%94%BC%EC%A0%9C%EB%A6%AC%EC%95%84&type=SITE_1), 검색일자: 2016. 1. 28.

- 이의신청을 위한 문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예를 들어 수입자, 수탁인, 대리인 등의 이름과 주소), 수입자 번호 혹은 에이전트의 수입자 번호, 통관일, 통관번호, 통관정산일 또는 정산 혹은 재정산을 포함하지 않는 세관의 처분일(date of a decision), 이의신청 대상 객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불만이나 납부내역 또는 거부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미해결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 접수일과 이의제기번호(과거에 등록된)를 기재해야 함
  - 몇 건의 통관에 대해 이의신청 시, 접수된 모든 통관에 대한 세관의 공통된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은 하나의 통관에 대한 이의제기로 간주되며 이 경우 모든 통관에 대한 정산일, 통관일, 통관 번호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 이의신청은 통관과 관련된 세관의 처분이 이루어진 날(정산일) 익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세관이 이의신청 문서를 접수한 날을 이의가 제기된 날로 간주함
  
- 19 C.F.R 174.21에 따라 세관은 일반적인 세관 행정문제(15. U.S.C 1514)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함
  - 「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및 운송이 배제되는 물품(exclusion of merchandise)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경우 세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익일로부터 90일 후 접수한 세관에 신속처리 요청을 하면 됨<sup>61)</sup>
  - 세관은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속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세관이 결정하지 않았을 시 30일 되는 날에 그 요청은 기각된 것(denied)으로 간주함
  
- 대부분 이의신청은 수입신고지 세관에 접수하고 처리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BP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sup>62)</sup>

61) 19 CFR 174.22 - Accelerated disposition of protest.

- 세관 및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법 또는 사실에 관한 문제인 경우
  - 과거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당해 수입자가 그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또는 법적 쟁점사안을 새로이 제출한 경우
  - 본청 법무관실에서 내부지침 요청 형태로 답변을 거부한 사안인 경우 등임
- 이의신청이 결정된 후 90일 이내(Within 90 calendar days)에 CBP는 관보에 해당내용을 게재하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검사(Public Inspection)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함

## 2) 재심사(further review)<sup>63)</sup>

- 이의신청의 재심사와 관련된 「관세법」상 규정은 19 U.S.C 1515이며 관련 절차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19 CFR 174.23-19 CFR 174.27에서 다루고 있음
- 이의신청자가 재심사를(further review; 이하 재심사) 원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2년)에 첫 번째 이의제기가 기각된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세관장에게 재심사 신청을 해야 함
- 접수된 세관의 세관장은 접수 후 30일 내에 재심사 요청에 대해 심사 여부를 메일로 송부해야 하며 심사가 승인될 경우 기존에 제기했던 이의신청 내역은 재심사를 담당하는 세관원에게 송부됨
- 이때 재심사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또 다른 이의제기가 아니며 담당 세관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추가 검토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접수된 세관의 세관장의 최종 결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심사를 요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62) FTA지원 종합 센터,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viewFtaNews&idx=29782&pageNo=3&column=&field=&data\\_type=&fta\\_type=61&mainNum=060209](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viewFtaNews&idx=29782&pageNo=3&column=&field=&data_type=&fta_type=61&mainNum=060209), 검색일자: 2016. 2. 1.

63) 19 U.S.C 1515 및 19 CFR 174.23-19 CFR 174.27을 번역한 내용임

- 재심사에서 지칭하는 심사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이의신청의 심사를 담당한 세관인보다 직급이 높은 심사인이어야 하며 이의신청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이어야 함
  - 이의신청자는 재심사 신청서 및 기존의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재심사 후 심사인은 관련 서류와 심사와 관련하여 결정 내용 문서를 세관장에게 전달해야 함

### 3) 추후절차

- 이의제기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기각된 경우 28 U.S.C. 2632에 따라 미국 국제 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에 민사소송(civil action)을 제기할 수 있음
  
-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메일로 기각통지가 발송된 날, 혹은 2년의 처리기간 후 세관의 처분이 내려진 익일, 신속처리에 따라 처분한 익일로 부터 180일 이내임
  - 세관장이 발부하는 기각 통지에는 이의신청인의 민사소송 제기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CIT의 법정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CBP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대부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게 됨<sup>64)</sup>
  
- 28. U.S.C 2631에서 CIT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세관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자 라도 예외의 경우 CIT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64) FTA지원 종합 센터,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viewFtaNews&idx=29782&pageNo=3&column=&field=&data\\_type=&fta\\_type=61&mainNum=060209](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viewFtaNews&idx=29782&pageNo=3&column=&field=&data_type=&fta_type=61&mainNum=060209), 검색일자: 2016. 2. 2.

-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내린 판정에 대한 불복, 및 상무부 장관이 내린 판정 등의 경우 이의제기 없이 CIT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CIT로 소송 시 피고는 미국 정부가 되고 원고는 수입자, 외국의 수출자 또는 미국의 생산자가 될 수 있음
- CIT의 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 C.F.R 176에서 다루고 있음
- 위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세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CIT의 법정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CIT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할 수 있으며 순회항소법원은 CIT의 사실에 기반을 둔 판결이 분명하게 쟁점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함<sup>65)</sup>
- 순회항소법원의 판결도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

#### 4) 기타 불복 절차<sup>66)</sup>

- 미국은 19. U.S.C 1516에 따라 미국 내의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업자가 수입되는 지정된 물품(designated)에 부과된 관세와, 물품의 분류, 평가된 가치가 국내의 물품에 비해 낮을 경우 관세청장에 대해(Commissioner; 이하 관세청장) 청원(Petition; 이하 청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 미국 국내 제조자, 생산자, 도매업자, 검증된 관련 조합, 제조자 및 생산자와 도매업자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협회 등이 청원을 제기할 수 있음
  - 국내 이해관계자의(Domestic interested party) 청원에 대한 절차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19 C.F.R 175.0에서 19 C.F.R 175.31에서 다루고 있음

65) FTA지원 종합 센터,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viewFtaNews&idx=29782&pageNo=3&column=&field=&data\\_type=&fta\\_type=61&mainNum=060209](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viewFtaNews&idx=29782&pageNo=3&column=&field=&data_type=&fta_type=61&mainNum=060209), 검색일자: 2016. 1. 29

66) 19.U.S.C 1516 및 19 C.F.R 175.0-19 C.F.R 175.31을 번역한 내용임

- 청원자(Petitioner; 이하 청원자)는, 청원자의 이름과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군, 본인이 제조, 생산, 도매하는 물품이 수입된 물품과 물품에 대한 설명,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관세율, 그렇게 생각하는 타당한 이유, 물품의 분류, 평가된 가치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신청서 3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청원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결정된 가치와 분류 및 관세율이 정당할 경우 관세청장은 청원자에게 이 내용을 공지해야 함
  - 그러나 청원이 기각되었을 때처럼 관보 혹은 공보에 게재하지는 않음
- 청원의 내용대로 수입된 물품의 가치와 분류 및 관세율이 잘못된 것일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수입물품의 적절한 가치와 분류 및 관세율을 주간 관보(Weekly Customs Bulletin)와 공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함
  - 해당 공고 익일부터 30일 후에 창고에서 반출되거나, 소비를 위해 반입되는(entered for consumption) 물품은 공고에 따라 분류되어 관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바뀐 품목분류를 적용받으며 해당 관세가 부과됨
- 청원에 대한 관세청장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 결정에 반한다는 통지(notice) 해야 함

## 2. 일본

### 가. 개관

- 일본 「관세법」은 크게 세관의 관세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절차와 물품의 통관절차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관세의 부과·징수 부분에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불복 절차는 「관세법」 제8장 제89조에서 93조까지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관세국은 재무부 내의 조직으로 관세 및 통관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세관의 세관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급기관인 재무부 재무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관세 법규 범칙 사건의 조사, 처분 정보에 관한 사무는 관세국 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 불복 심사회에 관한 사무는 업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수입허가 등 「관세법」 및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소송의 단계로 이루어짐
  - 단, 행정불복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재심사청구가 가능하기도 함
  - 원칙적으로 행정불복심사법에서는 상급행정청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만 인정하고 있지만 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음
    - 그러나 관세불복의 경우는 「관세법」 통달 89-1 규정에서 상급행정청인 재무부가 있다 하더라도 관세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sup>67)</sup>
  
- 일본은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대한 불복은 재무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며 이를 제외한 내국 소비세<sup>68)</sup>에 관한 심사청구는 국세불복심판소에 대하여 이루어짐<sup>69)</sup>
  - 일본 국세불복 심판소에서는 관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규정하는 국세불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과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라 불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70)</sup>
  - 단, 세관장이 할 소비세의 경정 처분 결정 처분과 체납 처분은 국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세관장이 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처분은 국세 통칙법의 이의 제기

---

67)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kaisei/zeikantsutatsu/kihon/TU-S47k0100-s08.pdf>, 검색일자: 2016. 2. 3.

68) 내국 소비세는 소비 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소비세,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지방 휘발유세, 석유 가스세, 또는 석유 석탄세를 말함

69)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kaisei/tsutatsu/H17tsutatsu424/yoshiki/C7007.pdf>, 검색일자: 2016. 2. 1.

70)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http://www.kfs.go.jp/system/faq/08.html>, 검색일자: 2016.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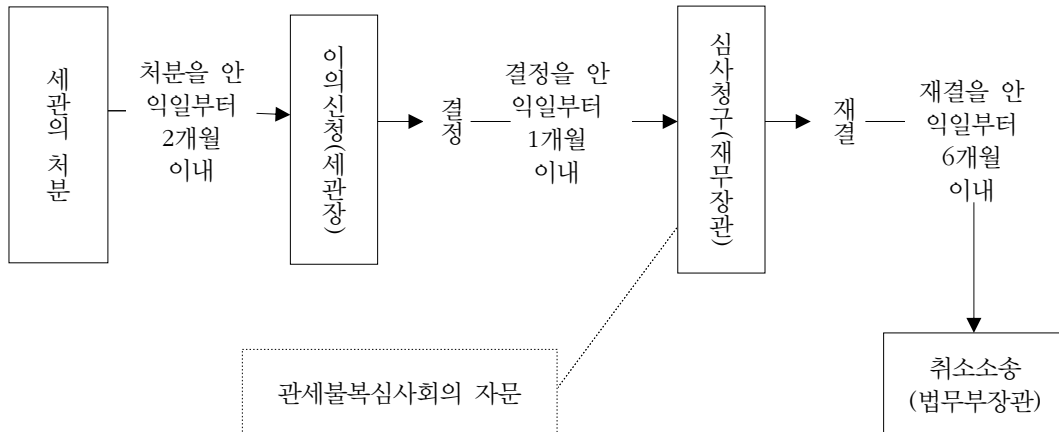
의 대상이 됨

- 이 경우 국세통칙법 제75조의 4에 따라 세관장에 이의신청을 하여 결정이 난 후 국세심판소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관세 불복의 구체적인 절차는 1962년 제정된 「행정불복심사법」과 「행정사건소송법」에 따르되, 「관세법」 제89조 내지 제93조에는 관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행정불복심사법에 규정한 기한 내에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sup>71)</sup>
-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행정불복 심사법의 적용 및 세관장의 처분 범위, 이의신청 절차, 결과고시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행정불복심사법과의 관계는 「관세법」 통달 제 9장에서 규정하고 있음
- 행정불복심사법에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심리절차, 행정불복심사회의 자문, 재결, 그밖에 행정불복 심사회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과 관련한 절차 및 내용은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관세불복 심사회령을 별도로 두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불복 심사회는 재무장관에 대한 심사청구 시 재무장관이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관세불복심사회령에 따라 관세불복 심사회 내의 관세 및 지적 재산권 분과위원회에서 「관세법」에 관한 심사청구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주관함
  - 관세불복 심사회는 재무부소속 심의회로 관세 및 지적재산권 분과회, 관세 분과회, 수입영화부회를 두고 있음
  - 분과회의 위원은 재무장관이 지명함

71)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4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401_jr.htm), 검색일자: 2016. 1. 28.

[그림 Ⅲ-3] 일본의 관세 불복절차



## 나. 사전심사제도

-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같은 사전 구제 절차는 없으며 단지, 청색신고자인 납세 의무자에 대해 경정 시 이유를 부기하여 납세자에게 처분의 사실판단이나 근거 법규를 서면으로 통지해주는 제도가 있음<sup>72)</sup>

## 다. 사후심사제도

### 1) 이의신청

-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처분한 세관장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의신청이라 함
  -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불복심사법(1962년법률제163호) 제45조에 따라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c-7000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은 「행정불복심사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함

72) 한귀전, 『사전적 조세구제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과세전적부심제도를 중심으로』, 2015. 8.

- 이의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이의신청에 관한 처분의 내용, 이의청구에 관한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이의신청 연월일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행정 절차 등에 있어서 정보 통신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항소가 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 「관세법」 또는 다른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관직원의 처분과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그 직원이 소속된 세관의 세관장이 한 처분으로 간주함
- 관세통달 89-2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처분범위는 다음과 같음
- 세관장이 세관장의 이름으로 하는 처분
  - 물품의 수용 및 유치
  - 「관세법」 제118조 제5항 범죄 화물을 몰수하지 않는 경우의 관세 징수
  - 「관세법」 제134조 제4항 내지 제6항 영치물건 또는 압류 물건의 반환 등에 대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 「관세법」 제69조의 2 제3항 수출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해당하는 취지의 통지 및 「관세법」 제69조의 11 제3항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해당하는 취지의 통지의 규정에 의한 통지
- 제89조(이의신청)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을 결정이라고 함

## [그림 Ⅲ-4] 일본 이의신청서 c-7000

税関様式C第7000号

## 異議申立書

平成 年 月 日

税関長 殿

異議申立人

신청인

住 所

주소

氏名(名称)及び年令

성명 및 나이

職 業

직업

関税法第89条第1項の規定により下記のとおり異議申立てをします。

## 記

1. 異議申立てに係る処分

이의신청의 처분

2. 異議申立てに係る処分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年月日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 월일

3. 異議申立ての趣旨及び理由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税関の教示の有無及びその内容

세관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결정 등본을 신청인에게 통지함
- 행정불복심사법 제20조에서는 당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이의신청의 전치를 규정하고 있음
  - 단, 처분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교시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경과해도 처분청이 당해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을 때 기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됨
- 관세의 확정 혹은 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 수출입 금지화물에 대한 통지, 수출입금지화물에 대한 인정절차 및 신청 절차에 따라 수리되지 않은 화물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무장관은 심의회 등에 자문을 요청해야 함
- 「관세법」 제89조의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국세통칙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세관장이 한 처분에 대한 따른 회의 신청 및 「지방세법」 제72조의 108의 화물 분할에 관한 처분에 관한 불복 심사 등의 특례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동일한 과세 물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의신청을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행정불복심사법」 제47조 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결정서에 관세 및 내국 소비세 등의 부과 또는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관한 결정 취지를 병기해야 함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잘못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교시하는 경우, 교시된 행정청에 서면으로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때에 당해 행정청은 신속하게 심사청구서를 당해 처분청에 송부해야 하고 그 취지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심사청구서가 처분청에 송부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처분청에 이의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함

- 이의 제기가 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경과해도 결정이 없거나 기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재무 장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sup>73)</sup>

## 2)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재무 장관에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고 함
- 「행정불복심사법」 제2조에서 행정청의 불복이 있는 자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제2절에서 심사청구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심사청구에 대한 답은 재결이라고 함
- 심사청구의 경우 「관세법」 제90조에서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심사청구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됨
  -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이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음을 안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였을 때는 청구할 수 없음
- 재무 장관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심리하고 그 결과를 재결서 등본을 심사청구자에게 통지함
- 심사청구서를 우편 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로 제출하는 경우 송부에 필요한 일수는 기산하지 않음
-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심사청구에 관한 처분의 내용,

73)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kaisei/tsutatsu/H17tsutatsu424/yoshiki/C7007.pdf>, 검색일자 2016. 1. 29.

심사청구에 관한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심사청구 연월일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관세의 확정 또는 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 처분의 경우와 음란 물품 및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취지의 통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의 재결을 한 후가 아니면 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청구 혹은 이의신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을 내린 행정청이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교시해야 하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청과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서면으로 교시해야 함
  - 내용이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일 때 교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당해 처분의 내용이 그 상대방 불이익 또는 부담을 부과하는 것일 때에는 교시를 실시함
  - 관세의 확정 또는 징수에 관한 처분 등의 불복에 대해서는 C-7007의 형식을 작성해야 하고 법 제 69조의 8 제3항 수입해서는 안 되는 화물에 해당하는 취지의 통지 규정에 의한 통지 불복 신청 등에 대해서는 C-7008의 형식을, 기타 교시에 대한 불복 신청 등에 대해서는 C-7009의 형식을 작성하여 통지해야 함
  
- 재무장관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을 안 익일 부터(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익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가능함
  - 취소 소송의 피고는 국가(대표자 법무부 장관)임
  - 재결의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제기할 수 없음
  - 심사청구가 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경과해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 재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3) 재심사청구

- 이 밖에 심사청구 후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재심사청구라 하고 이에 대한 답 또한 재결이라고 함
  - 재심사청구는 행정불복 심사법 제5절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재결에 대해 안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심사 기관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재결서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 및 재심사 행정청 및 재심사청구 기간을 기재하고 이를 교시해야 함
- 단, 재심사청구는 「행정불복법」 제8조에 따라 특별히 법 및 관련 조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심사청구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원 권한 청이 심사기관으로 재결을 요청할 수 있음
  - 재심사청구는 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절차로 보기는 어려움
  - 재심사청구는 법 및 관련 조례에 재심사청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해 법률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재심사청구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재무장관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가능함

## 3. 중국

### 가. 개관

-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중국 해관법(海関法)과 수출입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의 규정을 따르며 정식 명칭은 해관구제제도임

- 관세행정불복 피청구기관인 중국 해관은 우리나라의 세관에 해당하며, 중국 해관총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되는 기관임<sup>74)</sup>
  - 해관총서(관세청), 광동분서, 직속해관, 예속해관, 이하 산하해관 순으로 하위중속부서임
  
- 중국의 해관구제제도는 해관행정복의(海關行政復議)제도와 행정소송제도로 분류함
  - 행정복의제도는 해관 스스로 행정처분을 시정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행정심판 수단임
  - 행정소송제도는 인민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로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제도로 사법심판 수단임
  
- 해관법<sup>75)</sup>에서는 납세자가 납세분쟁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관세행정구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해관법 제5장 제64조(납세쟁의)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와 세관 간 납세에 대한 이의 발생 시 세금을 선납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출입관세조례<sup>76)</sup>에서는 납세의무인이 세금 납부에 불복할 시 이의신청 및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출입관세조례 제6장 부칙 제64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담보인은 세관의 납세의무인 확정, 과세가격 확정, 상품분류, 원산지 확정, 세율과 환율 적용,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세금 보충징수와 환급, 체납금 징수, 징세방식 확정, 납세장소(납세지) 확정 및 열거한 사항과 관련된 이의가 있으면 직속 상급 세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sup>77)</sup>

74) 국무원(중국 최고 행정기관으로 총리책임제를 실시) 직속의 독립기관(장관급)이며 법령 입안, 징수, 통관, 밀수단속, 심사 등과 같은 전반적인 관세업무 담당

75) 해관법의 주요내용은 해관조직제도, 해관감독제도, 관세제도, 해관사무담보제도 및 집행감독과 법률책임 등

76) 수출입관세조례 정책제정 및 관세 관련 행정법규에 대한 해석권은 국무원 소속의 관세세칙위원회가 담당

77) 농촌진흥청,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중국」, 2013. 4.

- 해관법과 수출입관세조례에서는 재심결정 즉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해관구제제도의 목적은 해관과 납세의무자 간의 납세 분쟁을 해결하고 납세의무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임
- 해관구제제도를 통해 납세자와 처분기관(해관)의 분쟁을 해결하여 마찰을 줄이므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데 기여함
- 해관행정복의는 1차적으로 징세해관에 이의신청 즉 행정복의를 신청하며, 동 복의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2차적으로 해관총서에 다시 복의를 신청하는 재심절차를 거치는 2단계의 복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단, 1차 행정복의 절차는 임의적 선택 단계로 필수전심절차가 아님
- 2단계 복의를 거친 결의에 대해 불복하게 되면 납세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수단을 최후로 선택할 수 있음

## 나. 사전구제제도

- 중국은 처분 전 혹은 과세 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전행정구제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 해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 후 사후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신청이 가능함

다. 행정복의제도<sup>78)</sup>

1) 행정복의(이의신청)

- 행정복의제도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취소, 변경을 요청하거나 납세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함<sup>79)</sup>
  - 행정복의는 직역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이의신청<sup>80)</sup>에 해당하는 제도이며 1차적인 불복청구임
  - 해관에서 확정된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 및 감면, 관세추징 및 환급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해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해관행정복의의 신청인은 국가의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이고, 피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처분행위를 하는 해당기관인 해관임
  - 해관행정복의제도는 행정행위를 행하는 부서의 상위기관이 아닌 본래의 징세기관인 처분 해관 자체를 1단계 복의기구로 함
  - 다만, 해관 이외의 기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행정복의 기관<sup>81)</sup>을 상급 행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sup>82)</sup>
  
- 행정복의 신청기한은 해관이 관세납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임<sup>83)</sup>

78)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근거

79) 한국법제연구원, 「중국 행정심판 제도의 주요 내용」, 검색일자 2016. 2. 10.

80)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처분한 세관장에 대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의신청이라 함

81) 행정복의를 책임지고 실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행정복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제도를 책임지며, 행정복의 신청수리, 심사, 결정, 처리 및 응소 관련 사항을 처리함

82)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 업무부문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이 선택적으로 그 부문의 인민정부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거나, 또한 차상급 주관부문에 행정심판을 신청(「행정복의법」 제12조),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jsessionid=wiS172Oe8dk2KiWMViwVwDhXigrhHeudLk38NvrCat2zEEjzNr0Ehbq1BctjamhK?mpbLegPstSeq=131000>, 검색일자: 2016. 2. 15.

- 납세자는 해관의 관세 부과, 추징 및 환급 등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부과 세금을 납부한 후에만 이의신청 즉 복의가 가능함
- 신청인은 해관에서 결정한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 단, 구두진술로 신청이 이뤄질 경우 해관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구두신청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이 기록을 현장에서 바로 복의신청인에게 제시하여 확인 서명이나 도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이 접수되면 해관은 사건조건을 심사하고 접수등록을 하게 됨
  - 단, 사건이 해관 접수범위나 법정 신청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해관은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이 이미 인민법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복의신청을 한 경우 해관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접수 거부의 경우 해관은 재정서<sup>84)</sup>를 신청인에게 배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림 Ⅲ-5] 중국 해관 행정복의 이행절차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1장제3조 참고하여 저자 작성

83) 한상현 외, 「한국과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14(1), 2013.  
 84) 해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함

- 행정복의서류 송달은 직접송달, 유치송달, 위탁송달, 우편송달, 전달송달, 공시송달 등의 방법이 있음
  
- 해관의 복의 심사는 사건의 진실성, 정확성 및 합법성을 조사하여 심리함
  - 심사의 내용에는 서류열람, 증거 확인, 법률문제의 심사 등이 포함됨
  - 해관은 신청서를 받은 7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며 복의인원을 확인하고 수리범위를 심사함
  
- 행정복의신청 시 작성할 내용으로는 복의신청기관 정보, 행정복의 행정기관 정보, 복의신청 사유 및 신청일 등임
  - 복의신청인 정보란 복의신청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소속과 연락방식 등이며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조직의 명칭, 주소,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복의신청기관 정보란 행정복의 신청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임
  - 복의신청 요구 시 복의신청의 주요 사유와 이유를 기재해야 함
  
- 해관은 심사를 통해 결의한 내용인 해관복의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행정복의 결정종류는 원래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부터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 등 총 5개임<sup>85)</sup>
  - 첫째, 원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둘째, 원래 처분을 보충하는 결정
  - 셋째, 일정 기한 이내에 원래 처분을 받아 이행시키는 결정
  - 넷째, 원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하는 결정
  - 다섯째, 피신청해관이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배상을 이행하는 결정

85) 「한국과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2013.

[그림 Ⅲ-6] 중국 행정재심신청서

申請行政復議申明事項 (행정재심신청서)		
申請人 신청인	姓名或名稱 이름	(如果申請人是個人填寫姓名,如果申請人是單位填寫全稱)
	代理人 대리인	(如果有代理人,請填寫代理人姓名)
	聯系電話 연락처	(填寫申請人和代理人的聯系電話)
	被申請人 피청구인(청구대상)	(填寫作出具體行政行為的行政機關)
	申請復議的具體行政行為 (특정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填寫行政機關作出的具體行政行為,例如“深人社認字(*)【2015】第***號《深圳市工傷認定書》”)
	知道具體行政行為的時間 (처분이 있음을 안날)	年 月 日 (填寫申請人知道該具體行政行為的日期)
	復議請求 (재심청구)	撤銷 <input type="checkbox"/> /變更 <input type="checkbox"/> /責令履行 <input type="checkbox"/> /確認違法 <input type="checkbox"/> (請選擇,打“√”)
	是否已向法院起訴 (사법심판여부)	(填寫“是”或者“否”)
	是否已向其他機關申請行政復議 (타기관행정재심신청여부)	(填寫“是”或者“否”)
本人保證所提供資料均為真實(簽名): (由申請人、申請人的法定代表人或者代理人簽名)(본인증명)		
年 月 日		

## 2) 재심신청(심사청구)

- 재심신청은 우리나라의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제도로 재심사청구라고도 하며, 행정복의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신청인이 해관의 결정에 불복 시 다시 심의결정(재심)을 내리는 행정구제행위임
- 해관의 행정재심의는 해관의 행정결정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관련법에 따라 해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심신청 해당기관은 해관총서이며, 해관의 행정복의결정에 불복 시 해관에서 발급한 행정복의결정서(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관총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해관총서는 관련 납세쟁의와 해관 처벌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해 심의하며<sup>86)</sup>,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재심결정서(재결)를 해당 해관과 재심신청인에게 통보함
- 행정재심 범위는 총 18개 경우이며 행정처벌 결정에 대한 불복,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 포함됨<sup>87)</sup>
  - 해관의 경고, 벌금, 화물·물품·운송공구와 특별제조설비 몰수, 몰수할 수 없는 화물·물품·운송수단의 등가대금 추징, 특정 감면세 우대의 임시중지 또는 취소, 관련 업무 또는 자격 정지, 등록 철회, 통관신고 자격 취소 및 기타 행정처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관련 화물, 물품, 불법소득, 운송공구, 특별제조 설비에 대한 압수결정에 불복할 경우

86) 관세청 외, 『외국 관세청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중국』, 2012.

8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2013, p. 75,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중국』, 2014, p. 49.

- 해관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관련 화물, 물품, 운송공구, 장부, 증서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 관련 수출입화물, 장부, 증서에 대한 밀봉 보존 등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담보를 수취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강제 집행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납세 의무자 확정, 과세가격 확정, 상품 분류, 원산지 확정, 세율과 환율 적용,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세금 보충징수와 환급, 체납금 징수, 징세방식 확정, 납세장소 확정 등 기타 세금 징수와 관련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법정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여 해관에 행정허가사항 또는 행정비준사항을 신청했지만 해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경우
  - 해관에서 운송공구와 장소를 검사하고 화물, 물품을 검사하거나 기타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 것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반품명령, 통관불가, 시정명령, 해체명령과 매각 등 행정결정에 불복할 경우
  - 해관 검사 결정 또는 기타 검사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 해관의 기업분류 결정과 그 분류결정에 따른 관리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해관에서 채택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에 불복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통관신고, 통관 등 해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에서 불법으로 신고 지체금 또는 기타 비용을 수취하고 불법으로 기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에서 법에 따라 인신권리, 재산권리를 보호하는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에서 정부정보 공개업무에서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해관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경우
- 중국의 행정심판제도는 1차 행정복의, 2차 재심신청 단계를 두고 있으며, 납세상의 분쟁은 재심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재심을 진행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sup>8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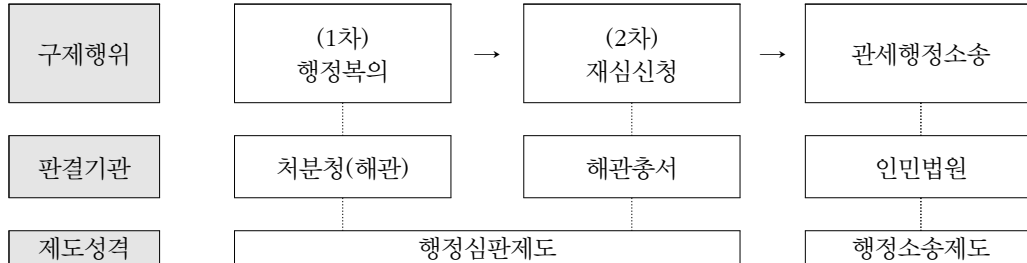
88) 중국 행정소송법 제37조는 “① 인민법원의 안건을 수리하는 범위에 속하는 행정안건에 대하여, 공

-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첫 징세해관에 1차 행정복의 신청 후 해당해관의 결정에 불복 시 해관총서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단, 납세상의 분쟁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조치, 처벌결정 또는 세수보전조치의 경우는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 중에서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자유재량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중국의 납세자들이 해관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는 해관구제제도가 사법심판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임
- 사법심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건해결을 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사건처리 시간이 행정심판보다 길다는 점에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행정구제제도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용이함
- 행정소송제도의 경우, 독립된 사법부에 의해 행해지는 쟁송절차로 납세의무자(원고)의 최후 구제단계에 해당되며 인민법원이 담당함
- 일종의 사법심사로 행정상대인과 행정기관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상대인이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고 인민법원은 관련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며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함
- 해관총서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관총서의 행정재심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제기가 가능함
- 또한 재심의기관이 재심결정 기한을 초과하면 신청인은 기한 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민·법인 및 기타 조직은 우선 상급 행정기관 또는 법률, 법규에 규정한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에 불복할 경우 다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예외조항도 있다. ② 법률·법규에 규정하기를 우선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행정심판에 불복할 경우 다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는 법률·법규의 규정을 따른다.”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jsessionid=wiS172Oe8dk2KiWMViwVwDhXi9rhHeudLk38NvrCat2zEEjzNr0Ehbq1BctjamhK?mpbLegPstSeq=131000>, 검색일자: 2016. 2. 15.

[그림 Ⅲ-7] 중국 관세행정 구제제도 진행 절차도



#### 4. 프랑스

##### 가. 개관

- 프랑스의 관세 불복 및 이의신청(Réclamation) 관련 조항은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공포한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EU) No. 952/2013과 프랑스 「관세법」(Code des douanes)에 근거하고 있음
- EU 신「관세법」은 제1부 일반규정 제2장 「관세법」령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제6절의 제 43조부터 제45조에 걸쳐 세 개 조항에 관세 불복 이의신청 관련내용을 따로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 「관세법」의 경우 이의신청 관련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각 조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관련 내용이 있을 시, 각 조항에 포함하여 기술해 놓음
-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과세 전 적부심사와 같은 사전 구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프랑스의 관세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과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절차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관세 불복 이의신청 제도

와는 차이를 보임<sup>89)</sup>

- 프랑스에서는 관세 불복에 대하여 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e Conciliation)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세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음
- 납세자가 관세 및 관련 세금과 관련하여 세관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e Conciliation) 또는 해당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 세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행정당국은 이의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당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에 대한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프랑스에서 관세 자체에 불복하여 재송을 진행할 경우, 행정판사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행정대법원(Conseil d'Etat)에서 판결을 받게 됨
  - 관세 관련 부가가치세(VAT)의 경우는 불복할 경우, 사법판사의 관할 아래에 속하게 되어 사법대법원(Cour de Cassation)의 판결을 받음
- 모든 이의신청 청구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간단 명료해야 함<sup>90)</sup>
  -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이의신청 서류는 별다른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 또한 특징임
  - 납세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 내용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나. 사전심사제도

-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제도에 해당하는 사전 구제 제도는 두고 있지 않음

89)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2009, p. 405.

90)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2009, pp. 407-408.

## 다. 사후심사제도

### 1) 유럽연합(EU) 신「관세법」 이의신청

- 유럽연합(EU)에서의 관세정책 및 입법은 유럽연합의 관할에 속하며, 회원국은 「관세법」령 집행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해 관할권을 가짐<sup>91)</sup>
  - 근대적인 「관세법」전의 철저한 준비를 목적으로 2008년 4월 23일 「Regulation (EC) No 450/ 2008」(Modernized Community Customs Code; 현대화유럽 「관세법」)이 제정됨
  - 2013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Regulation (EU) No 952/2013」(Union Customs Code; EU 신「관세법」)을 공포하였으며, 이로써 기존의 현대화유럽 「관세법」은 폐지됨
- EU 신「관세법」 제1부 일반규정 제2장 「관세법」령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제6절의 제43조부터 제45조에 걸쳐 이의신청 내용을 따로 명시하고 있음
  - 동 조항은 EU 신「관세법」 개정 이후 폐지된 기존의 현대화유럽 「관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포함되어 있었음

〈표 Ⅲ-1〉 EU 「관세법」상 이의신청 관련조항

현대화유럽「관세법」		EU 신「관세법」	
제6절 이의신청		제6절 이의신청	
제22조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	제43조	사법당국에 의한 결정
제23조	이의신청의 권리	제44조	이의신청의 권리
제24조	이행의 유예	제45조	이행의 유예

참조: EU 신「관세법」 참조하여 저자작성

- EU 신「관세법」 제44조 이의신청 권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관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세관당국이 취한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sup>92)</sup>

91) 이세정 외, 『관세법 분법 연구』, p. 119.

- 또한 세관당국에 어떠한 결정을 요청한 사람 그리고 제22조(3)에 언급된 기한 내에 요청에 대한 결정을 답변 받지 못한 자는 이의신청의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음
- EU 신「관세법」 제44조에 따르면 이의신청 권리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절차를 통하여 행사될 수 있음<sup>93)</sup>
  - 우선 회원국이 목적에 맞게 지정한 세관당국, 사법당국 또는 다른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후, 회원국에서 시행중인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 혹은 그와 동등한 특수기관 등 상위의 독립된 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결정을 요청하는 회원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국은 이의신청 절차에 있어 세관당국에 의한 즉각적인 확인 또는 경정결정을 보장하여야 함<sup>94)</sup>
- EU 신「관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분쟁사안에 대한 이행의 보류를 야기하지는 않음을 명시함<sup>95)</sup>
  - 그러나 세관당국은 분쟁사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관세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결정에 대하여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이행을 보류할 수 있음

## 2) 프랑스 「관세법」(Code des douanes) 이의신청

- 프랑스 「관세법」의 경우 이의신청 관련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각 조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관련 내용이 있을 시 기술해 놓은 것이 특징임

92) Regulation (EU) No 952/2013 Art. 44.

93) Regulation (EU) No 952/2013 Art. 44.

94) Regulation (EU) No 952/2013 Art. 44.

95) Regulation (EU) No 952/2013 Art. 45.

- 프랑스 「관세법」상 이의신청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은 아래표와 같음

〈표 Ⅲ-2〉 프랑스 「관세법」상 이의신청 관련조항

프랑스 「관세법」(Code des douanes)	
제29조	감정 및 분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4조	품목의 종류, 원산지, 가치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제108조~제109조	관세 및 세금의 결정
제352조	납세자에 대한 규정
제441조~제450-1조	조정위원회와 세관전문가

참조: 프랑스 「관세법」 참조하여 저자작성

- 프랑스 「관세법」(Code des douanes) 제1장: 관세체계의 일반원칙(Titre 1: Principes généraux du régime des douanes)의 제29조는 제28조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e Conciliation)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린 세관의 당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sup>96)</sup>
  - 제28조(Article 28)는 세관신고를 위한 상품의 품목 분류, 상품 통관절차 목록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록은 재정경제부장관 명에 의함을 명시함
- 프랑스 「관세법」 제4장: 통관절차(Titre 4: Opération de dédouanement)의 제108조 내지 제109조에 관세와 세금의 결정에 있어서 규정을 명시함<sup>97)</sup>
  - 제108조에는 제99조의 조항에 따라 관세와 세금은 세관신고접수 날짜로부터 유효함을 명시함
  - 또한 적용 관세율을 낮추고자 할 경우, 일정 조건하에 세관신고 일에 부과되었던 세율보다 더 유리한 세 세율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 프랑스 「관세법」 제352조(Article 352)에 따르면 세관당국에 의해 부과된 관세와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환불)은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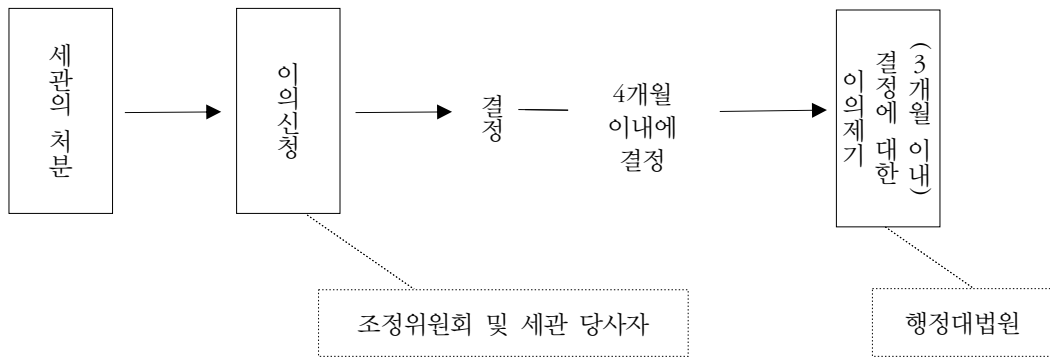
96) Code des douanes Art. 29.

97) Code des douanes Art. 108-109.

과 조건 내에서 행정당국의 관할이 됨<sup>98)</sup>

- 이러한 요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행정당국은 요청 후 4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 이의신청의 결과 행정당국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관세법」 제358조(Article 358)에 따라 행정당국 결정에 대한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그림 Ⅲ-8] 프랑스의 관세 불복절차



- 프랑스 「관세법」 제13장 조정위원회와 세관전문가(La commission de conciliation et d'expertise douanière)에 조정위원회와 세관전문가의 임명, 역할 및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 프랑스 「관세법」 제13장은 제441조에서 제450-1조로 구성됨
- 프랑스 「관세법」 제441조(Article 441)에 의하면 「관세법」 제104조(Article 104조)에 언급된 경우에 관세청은 신고자에게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통지하고, 중재위원회와 세관의 전문가들은 의견을 논의함<sup>99)</sup>
  - 관세청은 조사 후 조치를 취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견본을 채취하며, 견본채취에 대한 내용은 유럽연합(EU)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함
  - 「관세법」 제104조에는 품목에 대한 검사, 종(種), 혹은 상품의 가치 등에 관한 관세

98) Code des douanes Art. 352.

99) Code des douanes Art. 441.

청의 서비스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해 놓음<sup>100)</sup>

- 프랑스 「관세법」 제442조(Article 442)에는 이의제기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청은 최종 조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로 하여금 조사에 있어서의 행정적 근거 및 권고사항과 그것에 동의 여부, 보고서에 대한 답변의 제출을 고지할 것을 명시함<sup>101)</sup>
  - 만약 반대 의견이 지속될 경우, 관세청은 회신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회신에 명시된 답변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와 세관의 전문가들에게 소송기록을 제출해야 함을 명시함
  
- 프랑스 「관세법」 제443조(Article 443)에는 조정위원회와 세관전문가의 구성원, 역할 및 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sup>102)</sup>
  - 사법당국의 2인의 심사관 중 1인은 의장을, 다른 1인은 부의장을 맡음
  - 2인의 보좌관은 기술적인 전문성을 고려해서 지명됨
  - 부의장은 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세관전문가 및 그들의 대신은 최고행정재판소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임명됨
  
- 프랑스 「관세법」 제444조(Article 444)에 따르면 수입관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부장관은 화물의 성격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기관장의 공동명의로 신임 있는 자를 심사관으로 지명하며, 심사관들은 기능에 따라 각 사건으로 배정됨<sup>103)</sup>
  - 심사관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화물의 항목에 따라 적절하게 지명되어야 하나, 만약 이를 만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도 이의신청의 대상과 가장 관련 있는 심사관이 지명되어야 함을 명시

100) Code des douanes Art. 104.

101) Code des douanes Art. 442.

102) Code des douanes Art. 443.

103) Code des douanes Art. 444.

- 「관세법」 제341조의 민사소송에 관한 조항은 심사관과 그 대리인에게도 적용되며 심사관에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하며 지명된 다른 대행인으로 대체됨
- 심사관은 직업상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 프랑스 「관세법」 제445조(Article 445)에 조정위원회 의장은 사건조사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청취, 조사 혹은 분석을 지시할 수 있음을 명시함<sup>104)</sup>
  - 진성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양측 혹은 양측의 대표를 소환하여 동시에 그리고 대심 형식으로 조사한 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간을 정하고 평결을 거쳐 위원회의 구성원 대다수에 의해 도출된 결정을 양측에 통지함
  - 만일, 위에 언급된 기간 내에 양측이 합의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합의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제공함
  - 조정위원회는 결론에 평결구성원의 이름, 이의신청의 주제, 신고자의 이름과 거주지, 제시된 논쟁에 대한 간략한 진술, 기술적인 검증과 채택된 판결의 근거를 명시해야 함
  -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통지되며, 조정위원회는 또한 당사자들의 동의와 그들의 상업적 또는 산업적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결정 내용의 일부분을 대중에 공개 할 수 있음
  
- 프랑스 「관세법」 제446조(Article 446)에 법정에서의 다음 절차는 「관세법」 제12장: 소송과 징수 (Titre 12: Contentieux et recouvrement)의 제3항: 법원에서의 절차 (Chapter 3: Procédure devant les tribunaux)에 따름을 명시함<sup>105)</sup>
  
- 프랑스 「관세법」 제447조(Article 447)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원산지 또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정위원회의 물리적, 기술적 검증만이

104) Code des douanes Art. 445.

105) Code des douanes Art. 446.

법원에 의해 채택되어 질 수 있음<sup>106)</sup>

- 프랑스 「관세법」 제449조(Article 449)에 의하면 조정위원회와 세관전문가들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sup>107)</sup>
- 프랑스 「관세법」 제450조(Article 450)에는 품목의 통관 후 「관세법」 제63b조, 제65조 그리고 제334조에서 명시하는 요건하에 수행되는 검사 및 조사 과정에서 품목, 원산지, 혹은 품목의 가치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다음에 따른다고 명시함<sup>108)</sup>
  - 분쟁에 연루된 둘 중 어느 쪽도 이의제기에 대한 행정명령 통지 후 두 달 이내에 제 445-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와 세관전문가의 통지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으며, 세관은 이러한 사실을 위반확인 조서를 통해 신고자에게 알려야 함
  - 먼저 이의신청 발의를 한 쪽은 상대 또는 상대의 소송 담당자에게 동시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함
  - 조정위원회와 세관전문가들의 의견은 당사자인 양측 모두에게 최대 12개월 이내에 통지되어야 함
  - 조정위원회와 세관전문가, 법률전문가의 사전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이 법원으로 송치되는 모든 경우에, 세관소송을 판결하기 위해서 관할법률기관에 의해 규정된다면 그것은 조정위원회에 위임됨
- 프랑스 「관세법」 제450-1조(Article 450-1)에 따르면, 조정절차와 세관전문가에 대한 조건은 최고행정재판소의 법령에 의하여 정해짐<sup>109)</sup>
- 이의신청 청구에 있어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별다른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나, 프랑스어로 작성되어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간단명료해야 함<sup>110)</sup>

106) Code des douanes Art. 447.

107) Code des douanes Art. 449.

108) Code des douanes Art. 450.

109) Code des douanes Art. 450-1.

110)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2009, pp. 407-408.

- 납세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 내용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관세법」상 제출서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 놓고 있지 않음

## IV. 국제비교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는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공통적으로 관세 행정 구제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각국의 관세 행정 구제제도는 관세의 과세요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관련 법과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잘못된 경우, 통관 관련 처분을 잘못 내렸을 경우 등 과세관청(관세청, 관세국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적 구제 혹은 사법 구제를 제기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

### 1. 관세불복의 근거 법령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모두 「관세법」상에서 관세 불복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 혹은 관련 규정 유무, 관세 행정 구제에 적용되는 기타 법에서는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 관세 행정구제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 및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있음
  - 「관세법」 제118조-제13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54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 그리고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관세법」 19. U.S.C 1514-1515 및 규정 19 C.F.R 174.0-174.32 및 19 C.F.R 174.23-27에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행정법을 참조하지는 않고 있음

- 일본은 「관세법」 제8장 제89조-제93조 및 관세통달 98-1에서 관세불복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관세 불복에 대해 소송을 제외한 행정 구제 절차는 행정불복 심사법을 준용하여야 함
  
- 중국은 해관법과 수출입관세조례의 관세행정구제 규정을 따름
  - 해관법 제5장 관세제도, 수출입 관세조례 제6장에서 납세 쟁의 및 불복에 대한 구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는 EU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EU) No. 952/2013과 프랑스 「관세법」(Code des douanes)에 근거하고 있음
  - EU 신「관세법」은 제1부 일반규정 제2장 「관세법」령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제6절의 제43조부터 제45조 세 개 조항에 관세 불복 이의신청 규정을 명시
  - 프랑스 「관세법」의 경우 이의신청 관련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각 조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관련 내용이 있을 시, 각 조항에 포함하여 기술함

## 2. 사전 구제 수단의 유무

-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는 크게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 구제 제도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고, 사후에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
  
- 그 밖에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모두 「관세법」상 또는 관세 관련 규정상 사전 구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세관에서 관세 등의 징수를 심사 후 확정하여 부과한 세액을 납세자가 납부하고 세관이 요구하는 통관절차에 따라 통관을 진행한 후 관세 행정구제를 요청해야 함

### 3. 사후 절차의 단계 구분

- 우리나라는 납세 전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납세 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소송의 단계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함
  - 청구인의 1차 이의신청 기관은 세관이며, 불복 시 관세청에 2차 재심신청 즉,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심판청구의 피신청인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심사청구와 중복신청이 불가함
  - 감사원 심사청구의 피신청인은 감사원장임
  
- 미국은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의 단계를 통해 관세 행정 구제가 가능함
  - 1차 이의신청 기관은 CBP(세관장)이며, 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때 재심사청구도 CBP(세관장)에 대해 이루어짐
  - 재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불복할 시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할 경우 순회항소법원, 대법원의 단계를 거치게 됨
  
- 일본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2단계를 통해 관세 행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음
  - 1차 이의신청 기관은 관세청(세관장)이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무부(재무장관)에 대해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무부(재무장관)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중국은 2단계의 해관행정 복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1차적으로 징세해관에 이의신청 후 불복 시 2차적으로 해관총서에 다시 복의를 신청함
  
- 프랑스는 관세 및 관련세금과 관련하여 세관당국의 처분에 불복 시 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e Conciliation) 또는 해당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 세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당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4. 필수적 행정전치의 여부

-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모두 이의신청(미국) 및 심사청구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전치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미국), 심사청구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함
  - 프랑스는 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 세관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그 밖에 우리나라는 이의제기 후 처분에 반하는 경우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나 이의제기가 필수적 사항은 아니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분을 받고 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이의신청이 심사청구 전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미국은 재심사가 이의신청 처분에 반하는 요청이 아니라 이의신청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사로써 이의신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5. 기타 행정심판결정기관

- 우리나라는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에서 별도의 재심결정을 통한 관세행정권리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는 처분기관을 제외한 별도의 관세행정권리 구제 결정기관이 없음
  
- 미국, 프랑스, 중국은 일차적 처분 기관(세관 혹은 관세청)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사법수단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음
  - 미국은 세관의 처분 이후 불복 시 소송을 제기하며 관세의 소송은 별도의 국제무역

법원에서 다루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세관에서 일차적인 처분을 내린 후 상급기관인 재무부에서 심사청구를 담당하며 불복 시 소송으로 이어짐
- 중국은 2단계의 복의 결의에 불복 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지 않으며, 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세금이 부과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함

## 6. 이의신청 기간 비교

- 우리나라는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처분일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지만 미국은 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단, 미국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관세청의 처리 기간은 2년 이내임
- 일본은 세관처분에 대한 불복 시 처분일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중국의 행정복의 신청기한은 해관이 관세 납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임
  - 프랑스는 「관세법」상 불복 사항에 대하여 최초 이의신청 제기 가능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표 IV-1〉 각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법령 체계	「관세법」 제118조 - 제13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 제154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심판법」	「관세법」 19. U.S.C 1514-1515 및 규정 19 C.F.R 174.0-174.32 및 19 C.F.R 174.23-27	「관세법」 제8장 제89조에서 93조 및 관세통달 98-1 및 행정불복 심사법	해관법 제5장 관세제도, 수출입 관세조례 제6장	EU신「관세법」 Regulation (EU) No. 952/2013 제43조~제45조 및 프랑스 「관세법」 (Code des douanes)
사전구제수단의 유무	○	X	X	X	X
사후 절차 단계의 구분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이의신청 재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 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복의 재심신청	이의신청
필수적 행정전치 여부	○	○	○	○	○
기타 행정심판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감사원	N/A	N/A	N/A	N/A
이의신청 기간	처분일로부터 90일 내	처분일로부터 익일 180일 내	처분일 익일로부터 2개월 내	관세 납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내	N/A

## 7. 소결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사전구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가 이익을 침해당했을 시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행정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짐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이 사전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구제제도 도입 목적 및 취지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쟁송을 통한 사후구제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구제가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임<sup>111)</sup>

111) 정재완, 『관세법』, 2014, p. 487.

- 반면, 사전심사제도는 납세자가 사전에 과세관청을 통해 납세쟁의 관련 행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전구제신청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사전심사요청 과다로 인한 과세관청의 대응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행정심판결정기관 다원화를 통해서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재심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원하는 청구기관과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행정심판결정기관 일원화를 통해 조세불복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동 사안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음
  - 각기 다른 구제 수단은 재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 외에 다른 주요국은 행정심판기관으로써 해당행정기관 외에 기타 행정기관을 두고 있지 않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입법 조사처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나로 통폐합하거나,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존치시키되 감사원 심사청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sup>112)</sup>
- 동 사안은 관세뿐 아니라, 국세 관련 행정구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임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보고서는 관세행정구제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가별 제도 비교를 통해 관세불복 시 권리구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정책적 제언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관세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실효성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행정기관의 관세행정구제제도 이후 행정소송 결과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12)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07651](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07651), 검색일자: 2016. 3. 2.

## 참고문헌

- 강홍중, 「관세행정상의 납세의무자 권리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1.
- 김민호, 『중국 행정쟁송제도에 관한 연구』, 2006.
- 김영조 외, 『주요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국세청, 2005. 7.
- 관세청·관세무역개발원, 「외국 관세청의 정부조직 및 직무범위 연구: 중국」, 2012.
- 세계법제정보센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2010. 12.
- \_\_\_\_\_,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2009. 4.
- \_\_\_\_\_, 『프랑스 조세불복제도』, 2012.
- \_\_\_\_\_, 『일본 행정절차법』, 2009.
- \_\_\_\_\_, 『일본 관세법』, 2009.
- 정재완,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관세학회지』, 제4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3.
- \_\_\_\_\_,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4.
- 조세심판원,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 2014.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2009.
- 이세정 외, 『관세법 분법 연구』, 2013.
- 법제처, 「관세법」
- \_\_\_\_\_, 「관세법 시행령」
- \_\_\_\_\_,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대조표』
- 포봉,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연구』, 2013
- 한귀전, 『사전적 조세구제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과세전적부심제도를 중심으로』, 2015. 8

한상현 · 포봉, 『한국과 중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20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중국』, 2013.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100000000013&nttId=7991&mdex=bai24](http://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100000000013&nttId=7991&mdex=bai24) 검색일자 2016. 2. 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A%B4%80%EC%84%B8%EB%B2%95%EC%A0%9C118%EC%A1%B0](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A%B4%80%EC%84%B8%EB%B2%95%EC%A0%9C118%EC%A1%B0)  
검색일자 2016. 2. 4.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protests>,  
검색일자 2016. 1. 27.

일본 관세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401\\_jr.htm](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sonota/9401_jr.htm),  
검색일자 2016. 1. 28.,

<http://www.customs.go.jp/kaisei/tsutatsu/H17tsutatsu424/yoshiki/C7007.pdf>,  
검색일자 2016. 1. 29.,

<http://www.customs.go.jp/kaisei/zeikantsutatsu/kihon/TU-S47k0100-s08.pdf>,  
검색일자 2016. 2. 3.,

[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7000.pdf](http://www.customs.go.jp/kaisei/youshiki/form_C/C7000.pdf),  
검색일자 2016. 2. 5.

일본 국세불복심판소, <http://www.kfs.go.jp/system/faq/08.html>, 검색일자 2016. 2. 5

우리나라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home/law/rule/RuleUserDetail.do?layoutMenuNo=20215&admRul=2&admRulSeq=3737> 검색일자 2016. 2. 9.

유럽연합 신관세법 Regulation (EU) No. 952/2013, 유럽연합 법령정보 사이트

<http://eur-lex.europa.eu/homepage.html> 검색일자 2016. 2. 7.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07651](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07651), 검색일자 2016. 3. 2.

정보공개 포털 <http://www.open.go.kr/> 검색일자 2016. 2. 25.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홈페이지행정재심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159/tab69990/info768909.htm>

검색일자 2016. 2. 4.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http://www.tt.go.kr/mUser/guide/systemList.do>

검색일자 2016. 2. 11.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법령참조 홈페이지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14>, 검색일자 2016. 1. 2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15> 검색일자 2016. 2. 4,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16> 검색일자 2016. 2. 8,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part-174> 검색일자 2016. 2. 11,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9/part-175>, 2016. 2. 14.

FTA지원 종합 센터,

[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viewFtaNews&idx=29782&pageNo=3&column=&field=&data\\_type=&fta\\_type=61&mainNum=060209](http://okfta.kita.net/dataRoom.do?method=viewFtaNews&idx=29782&pageNo=3&column=&field=&data_type=&fta_type=61&mainNum=060209)

o=3&column=&field=&data\_type=&fta\_type=61&mainNum=060209

검색일자 2016. 2. 1.



관세연구 15-02

**주요 교역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

2015년 12월 23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 홍현표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822-4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